

보도시점

2026. 5. 17.(일) 11:00
5. 18.(월) 조간

배포 2026. 5. 15.(금) 16:00

“농촌! 품나는 공간으로”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솟품 공모전」 개최

- (접수) 5월 18일(월) ~ 7월 24일(금) / 학생, 일반인 등 국민 누구나 참여
- (시상) 대상 1편(장관상), 최우수 2, 우수 3, 장려 4, 총 1,200만원 상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사)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5월 18일(월)부터 ‘농촌공간계획 솟품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국민의 시선으로 담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모전에는 농촌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팀으로 참여 가능(최대 3편)하며, 농촌공간계획과 관련된 60초 이내의 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농촌공간계획**: 농촌의 난개발 및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개별분산적 개발 형태를 종합체계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4.3.), 지역 주도로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농촌협약을 통해 통합지원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영상 제작에는 AI 도구 활용도 허용되며, 순수 창작물이면 표현 방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5월 18일(월)부터 7월 24일(금) 18시까지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한 후 누리집에 안내된 구글폼에 작성·제출하면 된다.

※ 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소통24 누리집(<http://sotong.go.kr>, 공모전 → 공모전 공고), 농식품부 누리집(<http://mafra.go.kr>, 알림소식 → 공지·공고)에서 확인 가능

농식품부는 전문가 심사, 대국민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9월 중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총 1,200만원 규모의 상금 및 상장을 수여하며, 농식품부·농어촌공사·학회 공식 유튜브 및 SNS 채널을 통해 공개·홍보할 예정이다.

※ ▲대상(1편) 300만원·농식품부장관상, ▲최우수상(2편) 각 200만원·농어촌공사장상, ▲우수상(3편) 각 100만원·농촌계획학회장상, ▲장려상(4편) 각 50만원·농촌계획학회장상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전국의 매력적인 농촌 공간이 국민의 시선으로 발굴·공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1. 2026 농촌공간계획 솟품 공모전 포스터
- 2. 농촌공간계획 제도 개요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책임자	과 장	안유영 (044-201-1551)
		담당자	사무관	이동언 (044-201-1556)

농촌공간계획 솟품 공모전

농촌! 꿈나는 공간으로

참가신청



주제 농촌공간계획 정책 관련 자유 주제 솟품	규격 30~60초 영상 *AI 활용 가능
기간 2026. 5. 18(월) ~ 7. 24(금) 18시	시상 총 1,200만원 / 10점 선정 대상 300만원 최우수 200만원 우수 100만원 장려 50만원
대상 전 국민 누구나 (개인/팀)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한국농어촌공사 서울특별시 한국농촌계획학회

1. 추진배경

- 그동안 농촌은 주거, 경제기반 등에 대해 개별·분산적으로 개발
 - 공간의 효율적 이용·관리 체계 미흡에 따른 주택과 공장·축사 혼재 등 난개발은 정주 여건을 더욱 악화하고 투자 효율성 저하

< 공장, 창고, 축사와 주거지가 혼재된 농촌지역 >



⇒ 난개발 및 소멸 문제 대응 등을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지역 주도 농촌공간계획 체계로 정책의 틀 전환('24.3.29. 시행)

2.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계획 체계) 중앙정부는 기본방침으로 최소한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농촌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상향식 계획 수립*
 - * 주거·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경관 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회복 및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중장기 종합계획 마련
 - 주민제안·협정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 수요·아이디어를 계획에 반영
 - * (주민제안) 지역에 필요한 농촌 재생사업,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시·군에 제안
 - * (주민협정) 농촌특화지구 관리 등에 필요한 자치규약 마련 → 시·군이 이행 지원
 - (농촌특화지구) 계획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농촌특화지구 지정·활용, 주거, 융복합산업, 경관 등 기능별로 구획·집적화
 - * 유형(8개) :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 규제 완화(농지 등), 사업 집중으로 흩어져 있는 산업·서비스 시설 집적
 - (통합 지원) 시·군이 주민과 함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지자체 간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계획 실행을 위한 사업 통합 지원
 - * 5년간 최대 400억 원 국비 사업 패키지 지원 / '25년까지 96개 시·군 협약 체결
- ⇒ (기대효과) 공간을 기능별·계획적으로 관리하여 개별 인허가 중심의 축사·공장 입지 등 난개발을 예방하고 주민 삶의 질 및 정주환경 개선

참 고

농촌특화지구 정의 및 지정기준

연번	지구	특징
1	농촌마을 보호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농촌주민 등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등 정주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지정기준) ①집단화된 주거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마을의 가장 외곽에서 일정한 완충영역을 포함하여 지구 설정
2	농촌산업 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농촌지역 내 공장, 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이전·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지정기준) ①30,000㎡ 이상, ②농촌 마을 주변에 개별 입지한 공장·창고 등 소규모 시설의 이전 및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 ③농지와 주변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 등
3	축산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지정기준) ①30,000㎡ 이상, ②축사 등 축산업 관련 시설을 집적할 수 있는 지역, ③농지와 주변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 등
4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농업생산·제조·가공·서비스시설을 집약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지정기준) ①30,000㎡ 이상, ②농촌위해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마을 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③농지와 주변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 등 - (권장시설) 농업생산·제조·가공·유통·관광 등의 시설
5	재생에너지 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지정기준) ①50,000㎡ 이상, ②자연경관 및 정주 여건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지역 등 - (권장시설) 태양광 등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
6	경관농업 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동종·유사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형성을 통하여 농촌관광 자원 등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지정기준) 경관보전직불 지급대상 지역을 우선 검토
7	농업유산 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세계·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촌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지정기준) 농업·생태·문화·경관적 보전 가치가 있어 종합적 토지 이용 관리가 필요한 지역
8	특성화농업 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농업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하여 차별화된 재배방식 적용이 필요한 농산물을 집약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지구 - (지정기준) ①특정 농산물 등을 일정 면적 이상 재배할 것, ②주변 농산물 생산지역과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일 것 등